

의안번호	2200827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4.7.2.
추 계 번호	24B1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억 9,900만원, 2030년 2억 8,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억 4,300만원(연평균 5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1,799	—	—	—	—	1,799	360
임금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276	281	287	844	169
추가재정소요	1,799		276	281	287	2,643	529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3항)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항)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2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의 인건비 구분 지급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3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항)	—	• 미대상 －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5항)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임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비용은 고용노동부의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고용노동부가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중 가장 최근 사례인 한국잡월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2018년)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임금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의 15% 요율을 적용하고, 시스템 구축 후 1년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함

[표 2]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제공 및 신고·접수 등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 명칭	구축연도	구축비용(백만원)	주요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시스템	1999	1,591	전 국민 대상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자격정보 제공 등
노동위원회 노사마루	2005	1,449	조정 및 심판 관련 업무 차별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2009	1,390	근로자 대상 대부사업 안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노사누리시스템(재구축)	2016	1,513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근로감독, 산업안전 업무 지원
한국잡월드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2018	1,799	청년정책·공간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서비 스 제공(국무조정실로 이관)

자료: 고용노동부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6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 (유지·관리비용)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비용의 15%로 산출²⁾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 완료 연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년째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³⁾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억 9,900만원, 2030년 2억 8,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억 4,300만원(연평균 5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1,799	-	-	-	-	1,799	360
임금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276	281	287	844	169
추가재정소요	1,799		276	281	287	2,643	529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3년 개정판)」, 2023.12. 165쪽)
 3)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